



# 질문과 답변

## 최종 규칙 – 북마리아나제도 임시 노동자(Transitional Worker) 유형

### 서론

미국이민국(USCIS)은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외국인 노동자의 임시 노동자 비이민 비자 유형(CW)을 규정하는 최종 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동 CW 비자 유형은 북마리아나제도 외국인 노동자 허가 시스템이 다음으로 전환하는 동안 유효합니다: 미국 이민법. 동 전환기 중에 다른 비이민 취업 비자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비이민 노동자의 고용주는 CW 유형에 따라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임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는 공식적으로 2009년 11월 28일에 시작되었으며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 배경

미공법 110-229인 2008년 통합자연자원법(CNRA)은 2008년 5월 8일에 법으로 확정 서명되었습니다. 동 법의 타이틀 VII은 미국과의 정치적 연합 하에 북마리아나제도를 수립하는 조약을 승인하는 법인 공법 94-241을 개정하였습니다. 타이틀 VII은 최초로 대부분의 이민국적법(INA) 조항들을 북마리아나제도에 확대적용하였습니다.

## 질문과 답변

### 일반 질문

#### **Q1. 북마리아나제도에만 해당되는 임시 노동자(CW) 비자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A1. CW 비자는 합법적인 미국의 임시 이민 지위를 다음과 같은 적격 외국 노동자에게 제공합니다:

-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고용주를 위해 서비스나 노동을 수행하고; 또한
- 이민국적법 하에서 다른 종류의 비이민 취업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임시 노동자들은 북마리아나제도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전환기 종료 전에 적합한 대체 이민 지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규칙은 고용주들이 채용 방식을 조정하고 적격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민국적법 하에서 가능한 비이민 또는 이민 비자 유형을 취득할 시간을 허용합니다.

#### **Q2. 동 규칙은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살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A2. 동 규칙은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고용주들이 이민국적법에 따라 일할 자격이 없는 비이민 노동자들의 스폰서가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들 자신과 가족에게 적합한 장기 이민 지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외국인 노동자 22,000명 이상이 임시 CW 비자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CW 비자 유형에 해당될 수 있는가?**

A3. 아닙니다. 다른 비이민 취업 비자 유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있는 외국인은 질문 6에 서술된 바와 같이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Q4. 북마리아나제도에만 해당되는 임시 노동자 비자를 받으려면 개인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A4. 개인이 CW 비자 지위를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에 대한 요건

노동자들의 CW 비자 지위를 청원하려면 고용주는:

- 최종 규칙에 정의된 대로 합법적인 비즈니스에 종사해야 하며;
- 모든 고용 가능한 미국 노동자들을 그 직책을 위해 고려해야 하며;
-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고용주의 사업의 성격에 맞는 고용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 임시 노동자 고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 비차별, 직업 안전 및 최저임금 요건을 비롯한(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모든 연방 및 북마리아나제도 고용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 노동자가 승인된 입국 기간 종료 전에 어떤 이유로든 타의로 해고된 경우 노동자의 최종 외국 거주처로 돌아가는 교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은 CW-1 비이민 유형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음 법에 따라 다른 비이민 취업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미국 이민법;
- 거주자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된 직업 부문에서 일하기 위해 북마리아나제도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며;
- 북마리아나제도에서 사업을 하는 합법적인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의 수혜자이며;
- 북마리아나제도 이외의 미국 내에 체류하지 않으며;
-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체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북마리아나제도에 체류하며; 또한
- 달리 미국에 입국 가능하거나 입국 불허 이유에 대한 필요한 면제를 허락 받은 경우.

**Q5. 동 규칙 하에서 “합법적인 사업”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A5. 최종 규칙에서 정의된 합법적인 사업은 “이익을 위해 서비스나 상품을 생산하는 실제 활동하고 운영하는 상업 또는 사업 업무나 또는 정부, 자선단체 또는 기타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동 사업은 북마리아나제도 내 사업 수행에 대한 해당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매춘, 미성년자 인신매매 또는 연방법이나 북마리아나제도법에 위배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은 합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6. CW 비이민 유형 비자 취득 자격과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북마리아나제도에 체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A6.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지위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은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자가 (1) 지위 신청서 제출 당시에 “포괄 허가(umbrella permit)” 또는 기타 북마리아나제도 허가(2011년 11월 27일까지 만료)에 의해 승인된 체류 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또는 (2)관광객 또는 비즈니스 방문자로서의 입국이나 일시적 입국 허가를 제외한 국토안보부(DHS)에서 허락한 합법적인 북마리아나제도 입국이나 일시적 입국 허가의 기간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7. 동 비자 유형의 입국 코드는 무엇인가?**

A7. 비이민 비자 유형 입국 코드는 북마리아나제도에만 해당된 임시 노동자 본인의 CW-1이고 그 부양 가족은 CW-2입니다.

**Q8. CW 비자 유형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로 연장될 수 있는가?**

A8. 예. CW 비자 유형은 현재 전환기 종료일인 2014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그러나 미국 노동부는 북마리아나제도 임시 노동자 비자 유형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 이후로 연장할 권한이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현재 및 예상 노동 수요에 비추어 북마리아나제도에서의 적절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연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9. 임시 최종 규칙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얼마나 많은 대중의 의견을 받았는가?**

A9. 최초 및 연장 논평 기간 중에, 국토안보부는 북마리아나제도 총독 사무실, 사이판 상업회의소, 전직 북마리아나제도 상원의원 및 기타 관심 단체와 개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 및 단체로부터 146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접수된 모든 의견을 감안하여 본 최종 규칙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 공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질문**

**Q10. 언제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기 시작할 수 있는가?**

A10. 고용주들은 2011년 10월 7일에 청원서 제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노동자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날짜보다 6개월 이상 전에 노동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7월 1일에 노동자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를 같은 해의 1월 1일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Q11. 노동자가 현재 2011년 11월 27일에 만료되는 “포괄 허가(umbrella permit)”나 기타 북마리아나제도 노동 허가에 따라 북마리아나제도에서 고용된 경우, 동 노동자가 CW 지위를 받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는 언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A11. 고용주는 2011년 11월 27일까지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W 지위 허가 대상이 되려면 피고용인은 청원서 제출일 현재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2008년 통합자연자원법(CNRA)에 의거한 노동 허가가 2011년 11월 27일에 만료되며 그 날짜까지 그들을 위하여 CW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피고용인들은 더 이상 북마리아나제도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CW-1 비이민자로 스폰서하기 위한 청원서는 2011년 11월 28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혀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북마리아나제도 현지 시간으로 2011년 11월 27일 일요일 후 첫째 근무일 종료시까지).

북마리아나제도에 더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먼저 북마리아나제도를 떠나야만 고용주들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청원서가 허락되고 외국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CW 비자를 받기까지는 북마리아나제도에 재입국하여 취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Q12. CW 지위 청원서가 계류 중인 경우 2011년 11월 27일 이후에 고용주가 “포괄 허가(umbrella permit)”나 기타 북마리아나제도 노동 허가에 따라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가?**

A12. 예. 노동자의 합법적인 체류는 청원서 제출일에 근거하므로 고용주가 청원서를 2011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노동자는 CW 지위 허가 대상이 됩니다. 미국이민국은 우편소인이 2011년 11월 28일로 찍힌 청원서를 2011년 11월 27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한 대로). 고용주가 현재 2011년 11월 27일에 만료되는 포괄 허가(umbrella permit)나 기타 북마리아나제도 노동 허가에 따라 북마리아나제도에서 고용하는 노동자를 위해 CW 지위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합법적으로 동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는 경우, 노동자는 CW 지위를 받게 되며 계속 취업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거부되는 경우, 노동 허가는 그시로 중지됩니다.

**Q13.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청원하려면 고용주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A13.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청원하기 전에, 고용주는 CW 노동자가 말을 직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미국 노동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청원하려면 고용주는:

- I-129CW 양식인 ‘북마리아나제도에만 해당되는 비이민 임시 노동자를 위한 청원’을 제출하고;
- 북마리아나제도의 해당 업무, 활동 및 산업의 성격에 맞는 고용 조건을 제시하며;

- 고용주, 일자리 및 후보 노동자에 관해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며 자격 기준을 충족시킴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또한
- 해당 신청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14. 고용주가 각 임시 노동자별로 별도의 I-129CW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가?**

A14. 아닙니다. 고용주는 모든 노동자들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러 노동자들을 위해 한 청원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 같은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며;
- 같은 기간 동안 고용되며;
- 같은 장소에서 고용되며; 또한
- 청원서의 제2부에서 동일한 조치(지위 변경, 지위 연장 등)를 요청하는 경우.

**Q15. I-129CW 양식과 관련된 신청료는 얼마인가?**

A15. 적격자를 북마리아나제도에만 해당되는 임시 노동자로 스폰서하려고 하는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고용주인 경우, 아래의 관련 신청료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1	조치 2
연방 비이민 지위를 가지고(예를 들면, F-1이나 H-1B)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한명이나 그 이상의 노동자들을 위해 청원하는 경우...	I-129CW 양식을 \$325의 신청료와 함께 제출하고...	수혜자 당 \$150의 의무적 북마리아나제도 교육 재정지원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체 인식 수수료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북마리아나제도 허가를 받아 북마리아나제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미국이민국이나 세관 국경 보호국(CBP)이 일시 입국을 허락한(러시아나 중국에서 온 업무 또는 관광 방문자 제외)한명이나 그 이상의 노동자를 위해 청원하는 경우...	I-129CW 양식을 \$325의 신청료와 함께 제출하고...	수혜자 당 \$150의 의무적 북마리아나제도 교육 재정지원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지위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나 노동자가 \$85의 생체 인식 수수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영사관의 처리를 요청하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노동자들을 위해 청원하는 경우...	I-129CW 양식을 \$325의 신청료와 함께 제출하고...	수혜자 당 \$150의 의무적 북마리아나제도 교육 재정지원 수수료 제출해야 합니다. 생체 인식 수수료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노동자가 해외에서 자신의 비자를 신청할

		때 국부부에서 생체 인식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노동자를 위해 CW 지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I-129CW 양식을 \$325의 신청료와 함께 제출하고...	수혜자 당 \$150의 의무적 북마리아나제도 교육 재정지원 수수료 제출해야 합니다.

\* 가까운 장래에 외국 여행을 할 계획인 노동자들은 해외에서 영사관의 비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영사 처리 요청은 승인되더라도 수혜자에게 지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수혜자의 생체인식 정보 수집 및 지문 채취가 필요치 않으므로 더 빨리 처리됩니다. 아울러 영사 처리 요청의 경우 미국이민국에 대한 \$85의 지불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외국으로 여행하는 노동자들은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지위를 허락받았더라도 북마리아나제도에 재입국하려면 유효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Q16. 제출비를 면제 받을 수 있는가?**

A16. I-129CW 양식 및 생체인식 제출료는 고용주가 제출료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지만 그래도 피고용인의 임금은 지불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료 면제를 신청하려면 I-912 양식 ‘개별 제출료 면제 신청’이나 제출료 면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0 북마리아나제도 교육 재정지원 수수료는 면제될 수 없습니다.

제출료 면제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려면 [www.uscis.gov/feewaiver](http://www.uscis.gov/feewaiver)을 방문하십시오.

**Q17. 고용주는 I-129CW 양식 청원서와 함께 어떤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나?**

A17. 고용주는 적격성 입증에 필요한 증명서를 비롯하여 양식을 완전히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증명서의 구성요소들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가능한 한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직책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적격 미국 노동자가 없다는 증명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주는 결원 일자리를 일간신문 구인 광고나 북마리아나제도 노동부 및 사설 인력채용 회사가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결원 일자리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18. 고용주의 사업 허가가 북마리아나제도 정부에 의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든 허가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CW 노동자들을 위해 청원할 수 있는가?**

A18. CW 노동자들을 위해 청원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합법적인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하며, 이것은 그가 동 사업은 북마리아나제도 내 사업 수행에 대한 해당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능한 한도까지, 고용주는 모든 해당 허가 요건을 준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또는 직업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갱신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청원서와 함께 상태 진술과 모든 해당 사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이민국은 고용주 및/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요청한 CW 유형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각 케이스 별로 동 정보를 고려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가 직업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고용주는 동 허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19. 북마리아나제도 정부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금지된 고용주가 CW 노동자 청원을 할 수 있는가?**

A19. 고용주가 북마리아나제도의 “금지된 고용주 목록”에 등재되더라도 CW 외국인 노동자를 청원하는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하는 혜택의 수혜 자격과 관련하여 미국이민국이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청원서에서 동 목록 등재 사실을 밝히고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Q20. CW 지위 획득 자격으로부터 제외되는 직업 종류가 있는가?**

A20. 아닙니다.

**Q21. CW 지위 획득 자격을 갖추려면, 노동자는 이민국적법 하에서 다른 종류의 비이민 취업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한 노동자를 위해 CW 지위를 청원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다른 종류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절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A21. 아닙니다. 고용주들은 노동자를 위해 다른 비이민 유형 지위를 신청하였으나 거절 당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들은 직책이 성격상 임시적 또는 계절적이 아니며 (임시 또는 계절 노동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H-2B 비이민 유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 해당 노동자가 다른 유형의 비이민 노동자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위해 다른 비이민 유형 지위를 신청하였으나 거절 당한 고용주들은 증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22. 청원이 거부 당한 경우 항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22. I-129CW 양식에 대한 행정 항소 절차는 다른 비이민 유형과 동일합니다. CW-1 청원 거부에 대해 항소하려면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청원 고용주가 [I-290B 양식 '항소 또는 신청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용인이 아니라 청원 고용주만 거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지위 변경 신청이나 지위 연장의 경우 거부되더라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Q23. 개인이 가정 노동을 제공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키 위해 청원할 수 있는가?**

A23. 임시 노동자 규칙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사업을 하는 조직체만 CW 노동자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개정은 청원 자격이 없습니다.

### 노동자에 대한 질문

**Q24.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노동자는 CW-1 지위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A24. 오직 고용주만 노동자의 CW-1 지위 획득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스폰서가 되는 고용주가 있어야 하며 기본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은 CW-1 비이민 유형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이민법 하에서 고용에 근거한 다른 이민 지위를 획득할 자격이 없으며;
- 거주자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된 직업 부문에서 일하기 위해 북마리아나제도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며;
- 북마리아나제도에서 사업을 하는 합법적인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의 수혜자이며;
- 북마리아나제도 이외의 미국 내에 체류하지 않으며;
-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체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북마리아나제도에 체류하며; 또한
- 달리 미국에 입국 가능하거나 입국 불허 이유에 대한 필요한 면제를 허락 받은 경우.

**Q25. 적격 개인이 북마리아나제도 외에서 어떻게 CW-1 또는 CW-2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A25. 일단 고용주가 미국이민국에 제출한 I-129CW가 승인되면, 북마리아나제도 외에서 신청하는 적격 개인은 미국 국무부에 연락하여 고용주의 승인된 청원에 근거하여 CW-1 또는 CW-2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CW-2 유형은 CW-1 지위 소지자의 부양가족에 한합니다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Q26. CW 비자를 가진 개인은 미국 내 어디서나 고용될 수 있는가?**

A26. 아닙니다. CW-1 지위를 가진 개인은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승인된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조건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새로운 I-129CW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W 지위는 해당 개인이 광의 이웃 준주를 비롯하여 미국의 다른 주나 준주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습니다. CW-2 지위를 가진 개인은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또는 미국의 다른 지역이나 준주 내에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Q27. CW-1 지위를 가진 개인이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가?**

A27.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주가 I-129CW 양식 청원서를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새로운 고용주가 청원서를 제출하는 즉시 새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주 변경을 위한 경솔한 I-129CW 양식 청원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것은 청원서가 제출 당시에 CW-1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람이 자격을 충족시키는 실제 일자리 제의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원이 거부되는 경우, 노동 허가는 중지됩니다.

**Q28. CW 지위는 얼마 동안 유효한가?**

A28. CW-1 지위는 1년 동안 허락됩니다. 고용주는 새로운 I-129CW 양식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의 CW-2 지위는 당사자의 CW-1 지위와 같은 날에 만료되며 당사자의 CW-1 지위가 연장될 때 연장될 수 있습니다.

**Q29. CW 지위를 가진 개인의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는가?**

A29. 맞습니다. CW 비이민 지위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는 해당 CW 지위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반이 오직 고용 종료에 의해서만 초래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가 새로 취직하고 고용주가 그를 대신하여 경솔하지 않은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지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는 CW 지위의 다른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북마리아나제도에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새 고용주가 본 30 일 기간 종료 전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7 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새 고용주가 청원서를 제출한 후에만 새 고용주에게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청원서가 30 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북마리아나제도를 떠나야 하며 그 노동자는 CW-1 고용 종료 일부로 지위가 박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0 일 기간 후에 그 노동자를 위해 청원서가 제출된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고 북마리아나제도 외의 영사관에서 CW 비자가 발급된 후에도 외국인 노동자는 돌아와서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새로운 취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30. 나는 북마리아나제도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일해 온 외국인 노동자이며 나의 고용주는 CW 비자를 위해 나를 스폰서할 의향이 있습니다. 북마리아나제도에서 CW 지위를 얻기 위해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30. 이 경우에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단계: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를 스폰서하기 위해 다음 양식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I-129CW 양식;
- \$325의 신청료;
- 의무적인 \$150의 교육 수수료; 또한
- 귀하, 귀하의 고용주 및 일자리에 관해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시킴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귀하나 고용주가 청원서와 함께 \$85의 생체 인식 수수료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영사 처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I-129CW 양식을 제출한 후, 미국이민국은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을 위해 사이판의 TSL Plaza 내의 미국이민국 신청 지원 센터에 언제 출두해야 하는지 귀하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2 단계: I-129CW 양식이 승인되면, 미국이민국은 승인 통지서를 고용주에게 우송합니다. 고용주가 승인 통지서의 사본을 귀하에게 제공하도록 하십시오. 승인 통지서와 첨부 I-94 양식이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의 귀하의 지위가 CW-1으로 조정되었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승인 통지서는 귀하가 해외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서 CW-1 비자 처리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Q31. 나의 부양가족들이 CW 지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A.31. 귀하가 CW-1 지위를 얻기 위한 고용주의 신청의 파생건으로 북마리아나제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귀하의 부양가족들은 CW-2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W-2 지위 신청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290의 신청료;
- 해당되는 경우 \$85의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
- 승인 통지서와 CW-1 유형으로 북마리아나제도에 입국한 사실을 입증하는 I-94 양식의 사본 (제공 가능한 경우); 또한
- 지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 I-539 양식.

원 CW-1 지위가 처리되는 방식에 따라 부양가족들은 I-539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러면
외국 주재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귀하의 CW-1 지위에 대한 영사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귀하의 부양가족들도 동시에 그들의 CW-2 지위에 대해 영사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들은 북마리아나제도 외에서 CW 지위를 신청하는 경우 I-539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있으며 고용주가 귀하를 위해 CW-1 지위를 요청하는 I-129CW 양식을 제출한 경우...	<p>귀하의 부양가족들은 동시에 또는 I-129CW가 계류 중인 동안 아무 때나 I-539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4세 미만이거나 79세 이상이 아닌 한 I-539는 추가 생체인식 수수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지위 허락 신청이 거부된 경우 부양가족의 I-539 양식은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p> <p>I-539 양식이 승인되면, 미국이민국은 승인된 I-539 양식의 증거자료로 승인 통지서를 CW-2 지위 증거자료인 I-94와 함께 부양가족에게 보낼 것입니다.</p>

**Q32. 나의 부양가족들과 나는 2011년 11월 27일까지 북마리아나제도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것입니다. 고용주가 나를 위해 CW-1 지위를 청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2011년 11월 27일**

**이전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의 부양가족들도 2011년 11월 27일 이전에 그들의 CW-2 지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A32. 귀하와 북마리아나제도에 있는 귀하의 부양가족들이 CW 지위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귀하는 귀하의 CW 지위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귀하(노동자 본인)의 경우, 그것은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에게 CW-1 지위가 허락되도록 요청하는 I-129CW 청원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그것은 부양가족이 CW-2 지위 허락을 위해 I-539 신청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귀하나 귀하의 부양가족이 2011년 11월 27일까지 만료되는 포괄 허가(umbrella permit)나 다른 노동 허가를 받은 경우,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CW 지위를 허가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이 신청서들이 2011년 11월 27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미국이민국은 우편소인이 2011년 11월 28일로 찍힌 청원서를 2011년 11월 27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한 대로). 부양가족 신청서는 당사자의 CW-1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제출될 필요는 없지만, CW-1 신청서의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신청서는 부양가족이 아직도 합법적으로 북마리아나제도 내에 체류하는 동안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양가족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양가족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 제출한 비자 신청을 통해서만 CW-2 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3. 어느 부양가족이 파생 CW-2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A33.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18세 미만의 자녀)는 파생 CW-2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8세를 넘은 자녀와 부모나 다른 친척들은 CW-2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Q34. 나는 외국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이며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고용주가 나를 스폰서할 의향이 있습니다. CW 비자를 받기 위해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34. 이 경우에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단계: 귀하가 CW 비자를 받으려면, 스폰서하는 고용주가 먼저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I-129CW 양식;
- \$325의 신청료;
- 의무적인 \$150의 교육 수수료; 또한
- 귀하, 귀하의 고용주 및 일자리에 관해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시킴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2 단계: 청원이 승인되면, 미국이민국은 승인 통지서를 고용주에게 우송합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승인 통지서 원본을 귀하의 해외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귀하가 승인 통지서를 받은 후, 귀하는 인근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비이민 비자 인터뷰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부양가족들은 CW-2 비자를 동시에 미국무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I-129CW 양식이나 I-539 양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에 대한 별도의 신청서와 수수료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하와 부양가족은 귀하가 미국무부로부터 CW 비자를 받고 북마리아나제도 입국이 허락되기 까지 CW-1 또는 CW-2 지위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I-129CW 양식의 영사 처리 승인은 유형만을 승인하는 것이며 귀하에게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의 추가 지위를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Q35. 내가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CW-1 지위를 위해 나를 스폰서한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나의 포괄 허가(umbrella permit)가 2011년 11월 27일에 만료되는 경우, 청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나는 계속 일할 수 있는가?**

A35. 예. 귀하가 2011년 11월 27일에 만료되는 북마리아나제도 노동 허가에 의거하여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귀하의 고용주가 2011년 11월 28일까지 귀하를 위해 CW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귀하는 미국이민국이 청원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취업을 계속하도록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Q36. CW 비이민 비자를 위해 노동자는 국무부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가?**

A36. 국무부는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DS-160 양식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요금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국무부는 비록 식구들이 따로 여행할 계획이더라도 가족이 함께 제출하도록 권장합니다.

**Q37. 비자 인터뷰 약속은 어떻게 정하는가?**

A37. 각 미국 영사관에는 비자 약속을 정하는 자체 절차가 있습니다. 영사관에 따라, 전화나 온라인으로 약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정하기 전에 모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무부 웹사이트 [www.usembassy.gov](http://www.usembassy.gov)에는 비이민 비자 인터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웹사이트에는 각 해외 미국 영사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상 대기시간에 관한 정보도 있습니다. 청원 승인 통지서와 DS-160 양식을 약속 장소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Q38. 하나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38. 하나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 각 고용주가 별도의 I-129CW 양식을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Q39. CW-2 지위를 가진 수혜자는 일할 수 있는가?**

A39. 아닙니다. CW-2 지위는 취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Q40. 나의 배우자와 나는 모두 취업을 하였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CW-2 비이민으로서 일할 수 없는 경우, 내가 CW-1 지위를 받으면 배우자가 어떻게 계속 일할 수 있는가?**

A40. 해당 고용주들이 귀하와 배우자가 각각 CW-1 지위를 얻도록 청원할 수 있습니다.

**Q41. CW 비자를 가진 개인은 다른 유형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가?**

A41. 예. 전환기 중에, CW 임시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들은 다른 유형의 이민국적법 비이민 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2. 임시 노동자가 북마리아나제도 허가를 받은 경우 CW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인가?**

A42. 예. 연방 이민법에 따라 다른 노동 허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주가 노동자의 북마리아나제도 허가 만료 후에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면 고용주가 CW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허가 만료 시점이나 2011년 11월 27일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북마리아나제도에 남을 수 있습니다. 오직 고용주만 노동자가 CW 유형 또는 지위를 얻도록 청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만료되지 않은 포괄 허가(umbrella permit)를 가지고 있으며 북마리아나제도 외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 노동자가 돌아오려면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포괄 허가(umbrella permit)를 받은 피고용인을 위해 북마리아나제도 내의 CW 지위 허가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2011년 11월 28일까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W 지위로 북마리아나제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북마리아나제도를 떠나서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CW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Q43. 전환기가 종료되면 임시 노동자와 그의 부양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A43. 전환기 종료일인 2014년 12월 31일에 CW 유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이 미노동장관에 의해 연장되지 않은 한). CW 지위를 가진 임시 노동자들은 북마리아나제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를 원하면 이 날짜 전에 이민국적법에 의거하여 비이민 또는 이미 지위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에 대한 질문**

**Q44. CW-1 또는 CW-2 지위 소지자로 여행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A44. CW 지위 소지자들은 외국으로 여행하고 다시 북마리아나제도에 입국하기를 원하면 외국에서 미국무부로부터 CW-1 또는 CW-2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에 대한 별도의 신청서와 수수료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마리아나제도 외 여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국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Q45. 사전 일시입국 허가(advance parole)를 받은 노동자들이 해외 여행을 하고 북마리아나제도로 돌아오면 승인된 포괄 허가(umbrella permit)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

A45. 예. 유효한 포괄 허가(umbrella permit)와 유효한 여행 서류를 가진 노동자들은 사전 일시 입국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계속 여행을 하고 합법적으로 돌아와 북마리아나제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적법 하에서 적법한 노동자들이 계속 국제적으로 또는 비자 없이 미국 내에서 여행한 후에 북마리아나제도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비자 유형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민국은 사전 일시입국 허가 및 퍼롤-인-플레이스(parole-in-place)를 임시 조치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사전 일시입국 허가는 북마리아나제도 내에서 CW 지위를 받았고 그러므로 북마리아나제도로 돌아오기 위해 해외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개인들을 위해서는 보통 고려되지 않습니다.

**Q46. CW 지위를 가진 개인이 북마리아나제도 외로 여행한 후에 돌아올 수 있는가?**

A46. CW-1 또는 CW-2 비이민자는 북마리아나제도를 떠날 수 있지만 북마리아나제도에 재입국하려면 적절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CW 노동자는 북마리아나제도로 재입국하기 전에 해외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CW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북마리아나제도에 있는 동안 CW-1 또는 CW-2 지위를 받은 경우, 비이민자는 CW 지위 서류로서 I-94 양식 ‘도착-출발 기록’을 받게 됩니다.

**Q47. CW 지위는 북마리아나제도 이외의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유효한가?**

A.47. 아닙니다. CW 지위는 북마리아나제도에 국한됩니다. 달리 허가를 받지 않고 괌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거나 여행하려고 시도하는 CW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CW 지위를 위반한 것이며 미국으로부터 그들의 소속 국가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 규칙은 한 가지 중요한 예외를 허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48번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Q48. CW 비이민 지위를 가지거나 CW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괌 공항을 통과할 수 있는가?**

A48. 필리핀 국민인 사람들은 다음 조건 하에서 괌 공항을 통하여 북마리아나제도와 필리핀 간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 괌을 경유하여 북마리아나제도로부터 필리핀으로 향하는 출국행: 개인이 유효한 CW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8시간 이하의 괌 내 항공편 도중 체류 또는 연결을 포함하는 직접 일정으로 여행하고 있으며 개인이 통과 중에 괌 공항에 머무르는 경우.
- 괌을 경유하여 필리핀으로부터 북마리아나제도로 향하는 입국행: 개인이 유효한 CW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8시간 이하의 괌 내 항공편 도중 체류 또는 연결을 포함하는 직접 일정으로 여행하고 있으며 개인이 통과 중에 괌 공항에 머무르는 경우.

CW 지위나 CW 비자를 소지한 다른 사람들은 괌을 경유하는 도중 체류나 연결 일정을 갖춘 외국 목적지로의 왕래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미국 이민국 -